

정부민원안내콜센터 일반상담사 채용 면접심사 합격자 공고 [공개경쟁 및 장애인 제한경쟁]

정부합동민원센터 공고 제2026-7호 관련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일반상담사 채용 면접심사 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4월 23일

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장

1 면접심사 합격자

☐ 공개경쟁 및 장애인 제한경쟁

응시분야		인원	성 명(전화번호 뒷 자리)
공개 경쟁	주간 상담사	9명	김O희(7827), 김O주(7546), 박O미(1246), 심O경(9513) 이O지(5003), 조O정(7771), 최O희(4599), 최O호(7496) 황O민(1151)
	중근 상담사	-명	-
장애인 제한경쟁	주간 상담사	-명	-

2 합격자 제출 서류

☐ 1번 제출 서류: 채용담당자에게 제출

-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(전부), 주민등록표초본(주소변동이력 필요 없음,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),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및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(붙임 서식)

※ 합격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전부 다 표기 필요

- 제출 기간 : 2026. 4. 23.(목) ~ 2026. 4. 27.(월)

- 제출 방법 : 등기우편, 방문제출
- 제출 장소 :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채용담당자(02-2110-6508)
※ (13809)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, 정부과천청사 2동 608호

□ 2번 제출 서류: 안내문자 개별 발송

- 신원조사업무포털(bgi.police.go.kr)을 활용하여 서류 작성 및 제출
※ 면접심사 합격자 대상 1번 제출 서류 확인 후 안내문자 개별 발송

3 유의사항

-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결과 등에 따라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- 합격자 제출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고 연락되지 않는 경우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

• 해당하는 []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채용기관	기관명	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	채용방법	공개경쟁	채용직위(직급)	상담사
	채용사유	상담사 증원 및 결원				
채용대상자 (확인인)	성명	주소				
	연락처	생년월일			채용 예정일	2026.6.1.

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

① 가족채용	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?	[] 예 [] 아니오
	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(자회사인 경우 모회사)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?	[] 예 [] 아니오
② 예외 해당 여부	①에서 “예”에 답변한 경우,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?	[] 예 [] 아니오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26년 4월 일

채용대상자(확인인) 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- ① “가족채용”의 가족은 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.
1.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.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- 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

본인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일반상담사(공무직 근로자) 채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,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,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.

「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」 제9조(채용결격사유) 각 호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7.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제한)에 규정된 취업 제한 사유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2026년 4월 일

채용대상자(확인인):

(서명 또는 인)

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장 귀하